

소규모 사업자 정보 모음

2. 분쟁 피하기와 처리하기



관련 당사자들이 얼마가 되었든 돈을 건네거나 일을 해주기 전에 시간을 내어 서면 계약을 작성했다면 법정까지 번지는 많은 분쟁들을 피할 수도 있다. 서면계약서가 없거나, 서명전에 계약서를 읽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드는 오해와 스트레스, 시간이 걸리는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 대화나 악수에 의존하지 말라.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서명이 든 계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될 물품/서비스, 누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지, 일의 진행시기와 가격 또는 가격의 산정방법이 계약에 분명히 밝혀야 할 사항들이다.
-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케 하여 계약의 증거로 삼도록 한다.
- 물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 지불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이 계약에 포함되었나 확인한다. 계약조건들을 세금계산서에 첨부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 시간당 과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예상되는 비용의 견적을 제공하고 작업시간과 작업내용을 설명하는 상세한 작업표를 작성토록 한다. 이 작업표들에 업무 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둔다.
- 계약서 상에 거래상대가 누구이며, 회사인지 개인인지 분명히 명시하도록 한다. 권한이 있는 주요 연락책이 누구인지 밝힌다.
- 본인의 고용인들이 스스로 가진 권한의 한계를 알고 회사를 위하여 자신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도록 확실시 한다. 반드시 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해 둔다.
- 본인이 상대하는 사람이 상대편 회사로 하여금 계약을 맺게 할 권한을 가졌거나 그 비즈니스의 소유주인가 확인한다. 그 사람이 상대방 비즈니스 내에서 갖는 직책이나

직함을 적어 놓는다.

-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그 계약 조건들의 구속을 받게 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항상 서면 계약서를 읽어 보도록 한다. 계약서를 이해할 수 없으면, 반드시 법적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계약조건의 의미에 대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정해진 기간동안의 서비스 계약일 경우, 본인이 그 서비스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싶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둔다.
-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상업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내도록 노력한다. 주장하는 바를 법정까지 가져가는 것은 최후의 선택방법이어야 한다.

문제가 시작되면 일찌감치 도움을 구한다

업무관계 중에 관련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분쟁을 대처하는 방법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에 지기도 쉽고 충동적인 결정으로 결국 많은 비용이 파생되기도 쉽다. 오해나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면 새로운 기회도 얻고 게다가 문제들도 신속히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뉴 사우스 웨일즈 소규모 사업자 커미셔너 사무소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도와 사업상의 분쟁들을 신속히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을 찾아 내 준다. 중재관들은 정보제공, 전략 및 절차상의 조언제공, 비공식적인 협상 및 중재 도움, 타기관에 도움 의뢰나 자구책을 위한 옵션 제공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관해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원한다.

본 사무소에서는 법적조언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이런 조언이 필요할 경우 그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내용 요약

- 대화에 의존하지 말라.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서명이 든 계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항상 서면 계약서를 읽어 보도록 한다. 계약서를 이해할 수 없으면, 반드시 법적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 오해나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면 새로운 기회도 얻고 게다가 문제들도 신속히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뉴 사우스 웨일즈 소규모
사업자 커미셔너 사무소
1300 795 534
smallbusiness.nsw.gov.au

뉴 사우스 웨일즈 소규모 사업자 커미셔너 사무소

전화: 1300 795 534

이메일: we.assist@smallbusiness.nsw.gov.au

웹사이트: www.smallbusiness.nsw.gov.au

비공식 협상

관련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는 점이 있을 때, 첫 조치는 그 분쟁을 비공식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계약서와 그 외에 서로 주고받은 서신들이 있으면 다시 읽어본다. 서로를 탓하는 것을 피하며 공개토론을 하면 쌍방이 서로다른 견해를 털어놓고 신속히 이런 차이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야기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안고있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을 선택방안들을 제공한다.

협상으로 얻어진 계약의 경우,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본인과 상대방이 반드시 이를 문서화 하도록 한다. 간단히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쓰는 식이어도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오해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표출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문서를 쌍방모두가 지니게 된다.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으면, 분쟁해결을 위해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협상으로 안 되면, 분쟁해결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소송이란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약간의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비용을 덜 들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분쟁건을 위한 준비작업

본인의 분쟁건이 비공식 협상을 통하든 혹은 중재나, 재정위원회 혹은 법정을 통하여

다루어지든 간에 그 분쟁건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의 비즈니스에 관한 정보가 기밀사항이고 보호돼야 하긴 하나, 상대방에게 본인의 입장이 얼마나 유리한지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회 위원을 납득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변호사와 하급법원 판사나 상급법원 판사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본인의 주장을 누구에게나 납득시키려 할 때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본인의 비즈니스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려 할 때, 그저 구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하지 말고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

법적 조언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이다. 본인의 케이스가 법적으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 협상을 위해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법적조언을 구하지 않기로 선택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나 계약서를 완전히 읽어보고 본인의 계약서에 적용되는 해당 법조항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칠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협상이나 중재 도중에 혹은 재정위원회에서 대두될지도 모를 토의사항들에 대한 준비를 한다.

재정위원회는 법정과 유사하다. 위원회에서는 해당사건에 관한 법적문제와 임대차계약서나 계약서, 그 밖에 다른 증거를 살펴 본다. 따라서, 재정위원회에 접촉하기 전에 법적조언을 구하여 본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재

비공식 협상으로 분쟁해결이 안 될 경우, 뉴 사우스 웨일즈 소규모사업자 커미셔너 사무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논의하기 위하여 이 사무소의 중재담당관이 본인과 상대방에게 연락할 것이다.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면 중재담당관이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하여 비공식적으로 비용부담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정식 중재를 추천하여 중재관의 인도하에 쌍방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회의를 하게 된다.

중재관은 관련당사자들이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받은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각측은 반드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게 되어 있다. 중재관은 중립적인 입장의 제 삼자이며

내용 요약

- 관련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는 점이 있을 때, 첫 조치는 그 분쟁을 비공식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본인의 비즈니스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려 할 때, 그저 구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하지 말고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
- 법적조언을 구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이다. 본인의 케이스가 법적으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 협상을 위해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뉴사우스 웨일즈 소규모 사업자 커미셔너 사무소
1300 795 534
smallbusiness.nsw.gov.au

한 쪽이 옳거나 그르다고 결정해 주거나 결과를 정하거나 법적조언을 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중재관은 다양한 선택방법이 지닌 이점과 불리한 점들을 쌍방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를 해결할 수도 있을 상업적인 선택방법들을 고려하게 해 준다.

2014년에 중재에 드는 비용은 각측 별로 시간당 152불이다. 분쟁 당사자 양측은 각각 선불로 760불 씩을 지불하도록 요청되는데 이는 다섯 시간의 중재비용에 해당한다. 중재비의 과금(혹은 환불은) 중재사안의 해결을 위해 중재에 시간을 더 들였나 덜 들었나에 따라 한 시간 단위로 계산된다.

대부분의 분쟁건들은 중재 시에 혹은 중재 전에 해결이 된다.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취하는 다음 단계는 분쟁건을 재정위원회나 법정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단계동안 계속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매업 임대차계약 분쟁

소매업 임대차계약의 경우, 분쟁건들은 분쟁의 액수에 따라 대부분 뉴 사우스 웨일즈 민간 및 행정 재정위원회 (이하 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와 세입자는 자신들의 법무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이례적인 상황에서 재정위원회가 한 측이 상대방측의 법무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도 한다.

세입자가 분쟁건을 재정위원회에 진정하려면 신청서와 보증서류들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신청비를 내야 한다. 재정위원회 신청서식은 위원회의 웹사이트인 www.ncat.nsw.gov.au 에서 한 부 다운 받으면 된다.

(주의: 소매업 임대차계약건들은 재정위원회의 소비자 및 상업분과에서 다루어 진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중재실패 증명서'를 요구할 것인데 이 증명서는 뉴 사우스 웨일즈 소규모 사업자 커미셔너 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재정위원회나 법정에 가기 전에 법적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위원회에서 스스로를 변론하기로 작정했다면, 유용한 관련정보를 www.lawlink.nsw.gov.au 에서 얻을 수 있다.

위에 적힌 웹사이트에서 신청방법, 법정문서 발급 및 제출방법, 재정위원회에서 본인의 분쟁건이 심리되도록 하는 데 관한 기타

절차들에 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분쟁건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제시하며 재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입장을 납득시킬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각각의 주장하는 바를 사실들로 입증함으로써 본인의 분쟁건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증거로 유용한 것들은 편지, 사진, 대화나 기타 문서들이다. 본인이 급전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하려면, 전문가의 회계보고서나 현금수지 계산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재정위원회 위원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다.

반드시 사전에 **소매업 임대차계약법** 및 본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읽어 보고 본인과 유사한 분쟁건들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austlii.com.au
www.lawlink.nsw.gov.au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재정위원회가 최종기한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재정위원회로부터의 명령에 관한 것이든 소환장에 답변하라는 지시에 관한 것이든 이를 지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재정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측의 법무비용 전체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업 임대차계약이나 소규모 사업자 분쟁

소규모 사업자 분쟁이나 상업 임대차계약 분쟁을 어떤 법원이나 재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청구된 혹은 분쟁대상인 액수와 어떤 분야의 법이 관련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본인을 도울 사무변호사가 없는 경우, 하급법원의 소액청구 분과가 아닌 다른 법원에서 분쟁건을 제대로 처리하기는 매우 힘들다.

법률 협회 (뉴 사우스 웨일즈)에 **9926 0156** 으로 전화하면 본인의 분쟁건이 전문분야인 사무변호사들에게 변호의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법률 협회의 사무변호사 등록부를 조회해 볼 수 있다.

www.lawsociety.com.au

법정절차나 본인 스스로 변론하는 것, 또 특정분야의 법률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LawAssist (로어시스트)의 웹사이트는 www.lawassist.lawaccess.nsw.gov.au 이다.

내용 요약

- 재정위원회나 법정에 가기에 앞서 법적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재정위원회가 최종기한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소규모 사업자 분쟁이나 상업 임대차계약 분쟁을 어떤 법원이나 재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청구된 혹은 분쟁대상인 액수와 어떤 분야의 법이 관련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뉴사우스 웨일즈 소규모
사업자 커미셔너 사무소
1300 795 534
smallbusiness.nsw.gov.au